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보이지만 됩니다.

(붙임2)

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	강*석 귀하
주 소	(63629)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88 ***

하귀농협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.09.29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하귀농협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농협자산관리회사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 ·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귀농협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하귀농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www.hagwi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9.29.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☑ / ☐ (단위: 원)

대출과목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☑ / ☐
BC카드	901136-128-0209993	3,002,522	2,500,000	1,396,867	-	☐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**하귀농협(064-798-1136)**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일

양도예정인	하귀농협 **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** **조합장 강병진 (인)**

1656830226 901136 강기*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하귀농협(☎064-798-11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농·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농·축협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농·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농·축협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1656830226 901136 강기*

중요 문서 무단 압축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(붙임2)

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	강*수 귀하
주 소	(63024) 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남1길 **-*

하귀농협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.09.29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하귀농협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농협자산관리회사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 ·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귀농협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하귀농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www.hagwi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9.29.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㉮ / ㉯ (단위: 원)

대출과목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㉮ / ㉯
상호금융대출	901136-128-0210696	18,000,000	9,758,197	2,510,244	38,197	㉯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**하귀농협(064-798-1136)**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일

양도예정인	하귀농협 **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** **조합장 강병진 (인)**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하귀농협(☎064-798-11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농·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농·축협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농·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농·축협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1656830226 901136 강기*

(붙임2)

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	강*현 귀하
주 소	(63077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서4길 ** ***호

하귀농협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.09.29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하귀농협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농협자산관리회사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 ·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귀농협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하귀농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www.hagwi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9.29.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㉮ / ㉯ (단위: 원)

대출과목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㉮ / ㉯
BC카드	901136-128-0210322	5,334,642	5,297,671	1,911,558	42,568	㉯
상호금융대출	901136-128-0210247	30,000,000	0	743,095	-	㉯
BC카드	901136-128-0210348	7,304,733	7,303,980	2,714,673	78,219	㉯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**하귀농협(064-798-1136)**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일

양도예정인	하귀농협 **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** **조합장 강병진 (인)**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하귀농협(☎064-798-11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농·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농·축협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농·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농·축협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1656830226 901136 강기*

(붙임2)

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	권*순 귀하
주 소	(63584) 제주 서귀포시 홍중로 76-3 ***호 (서홍동)

하귀농협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.09.29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하귀농협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농협자산관리회사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 ·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귀농협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하귀농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www.hagwi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9.29.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☐예 / ☐부 (단위: 원)

대출과목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☐예 / ☐부
상호금융대출	901136-128-0120700	849,998	849,998	200,463		☐부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**하귀농협(064-798-1136)**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일

양도예정인	하귀농협 **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** **조합장 강병진 (인)**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하귀농협(☎064-798-11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농·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농·축협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농·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농·축협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1656830226 901136 강기*

(붙임2)

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	김*준 귀하
주 소	(63150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마로3길 11-* *층

하귀농협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.09.29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하귀농협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농협자산관리회사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 ·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귀농협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하귀농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www.hagwi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9.29.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☐예 / ☐부 (단위: 원)

대출과목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☐예 / ☐부
BC카드	901136-128-0210595	927,481	913,718	376,612	-	☐부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**하귀농협(064-798-1136)**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일

양도예정인	하귀농협 **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** **조합장 강병진 (인)**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하귀농협(☎064-798-11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농·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농·축협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농·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농·축협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1656830226 901136 강기*

(붙임2)

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	양*선 귀하
주 소	(63051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23길 14 ***호

하귀농협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.09.29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하귀농협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농협자산관리회사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 ·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귀농협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하귀농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www.hagwi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9.29.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㉮ / ㉯ (단위: 원)

대출과목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㉮ / ㉯
상호금융대출	901136-128-0210335	8,000,000	744,000	233,995		㉯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**하귀농협(064-798-1136)**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일

양도예정인	하귀농협 **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** **조합장 강병진 (인)**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하귀농협(☎064-798-11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농·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농·축협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농·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농·축협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1656830226 901136 강기*

(붙임2)

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	이*훈 귀하
주 소	(63126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11길 26-5 ***호(연동 삼오한마음아파트)

하귀농협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.09.29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하귀농협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농협자산관리회사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·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귀농협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하귀농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www.hagwi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9.29.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☐예 / ☐부 (단위: 원)

대출과목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☐예 / ☐부
자립예탁금	901136-128-0210364	4,528,808	4,528,808	2,013,589		☐부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**하귀농협(064-798-1136)**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일

양도예정인	하귀농협 **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** **조합장 강병진 (인)**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하귀농협(☎064-798-11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농·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농·축협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농·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농·축협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1656830226 901136 강기*

(붙임2)

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	이*신 귀하
주 소	(63127) 제주 제주시 성신로1길 ** (연동)대림아파트 101 동 *** 호

하귀농협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.09.29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하귀농협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농협자산관리회사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 ·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귀농협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하귀농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www.hagwi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9.29.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㉮ / ㉯ (단위: 원)

대출과목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㉮ / ㉯
BC카드	901136-128-0210612	349,877	349,877	114,435		㉯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**하귀농협(064-798-1136)**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일

양도예정인	하귀농협 **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** **조합장 강병진 (인)**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하귀농협(☎064-798-11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농·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농·축협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농·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농·축협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본 문서는 농협의 동의 없이 무단 배포 및 복제를 금합니다.

(붙임2)

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	전*영 귀하
주 소	(63053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2길 **-*

하귀농협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.09.29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하귀농협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농협자산관리회사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 ·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귀농협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하귀농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www.hagwi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9.29.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☒ / ☐ (단위: 원)

대출과목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☒ / ☐
BC카드	901136-128-0210566	1,193,023	1,190,073	319,123	-	☐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**하귀농협(064-798-1136)**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일

양도예정인	하귀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 조합장 강병진 (인)

1656830226 901136 강기*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하귀농협(☎064-798-11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농·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농·축협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농·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농·축협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1656830226 901136 강기*

(붙임2)

채권양도 예정 통지서

수 신 인	현*화 귀하
주 소	(63140) 제주 제주시 연화로4길 39 ***호 (연동,해피하우스2차)

하귀농협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.09.29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따라 하귀농협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농협자산관리회사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 ·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귀농협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하귀농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www.hagwi.nonghyup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9.29.기준)

소멸시효 완성여부: ㉮ / ㉯ (단위: 원)

대출과목	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㉮ / ㉯
BC카드	901136-128-0 210579	2,000,000	2,000,000	715,933		㉯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상담 문의는 **하귀농협(064-798-1136)**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일

양도예정인	하귀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 조합장 강병진 (인)

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하귀농협(☎064-798-11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농·축협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농·축협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농·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농·축협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1656830226 901136 강기*